

보상금 지급신청 []기각 결정 통지서
[]각하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:)
보상 결정 사항	결정 내용	
	결정 이유	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·제5항·제6항
·제9항에 따라

귀하의 손실보상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[] 기각
[]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※ 문의 전화번호:

합동참모의장,
각군 참모총장
또는
해병대사령관

직인